



추진절차



01 신청·접수

사업주 → 경제진흥원
※필요 시 추가모집



02 지원대상 심사·선정

경제진흥원
※필요 시 추가모집



03 보험료 지급신청

사업주 → 경제진흥원



04 보험료 지급

경제진흥원 → 사업주



05 노동자 보전확인

사업주(증빙제출) → 경제진흥원



문의 및 기타사항

문의

(재)경상남도 경제진흥원
일자리노동정책팀
☎ 055-230-2941~2,
055-212-6776

광고문 확인

(재)경상남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
<https://www.gnepa.or.kr> ▶
사업공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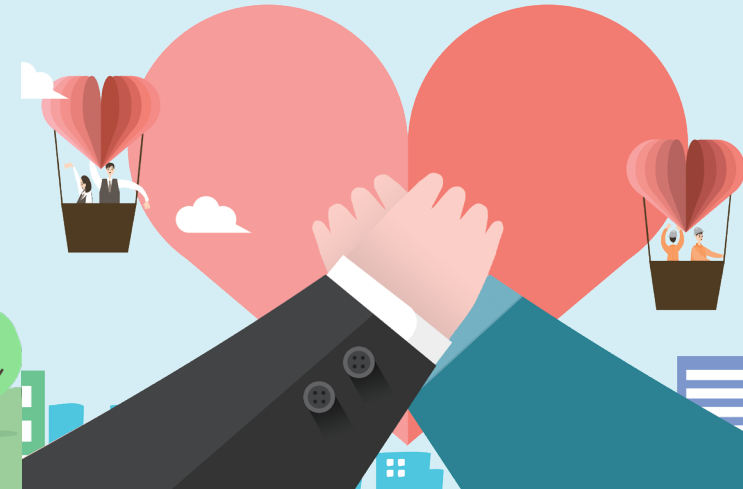
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

4대보험료 지원사업

본사업은 4대 보험료 지원을 통해
도내 영세사업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,
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
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2021. 3. 29(월)

~ 예산 소진 시까지





사업개요

사업명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

사업목적 4대 보험료 지원을 통한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로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

지원대상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장

01 기업요건 2020년도 월 평균 및 신청일이 포함된 월 평균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
- 노동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(고지내역서 확인 필수)

02 소득요건 월 평균소득 220만원(세전기준) 미만인 노동자
※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노동을 대가로 지불하는 보수(세전)의 월 평균금액

03 거주요건 2021년 1월 1일 이전 경상남도 내 주소지를 둔 노동자
- 반드시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내에 속한 경우만 요건 적합

04 시기요건 2021년 1월 1일 이후(1월 1일 포함) 고용보험 신규 가입한 근로자

지원규모 1,512백만원
기업당 지원인원에 제한없음



지원내용 고용보험 신규가입 사업장 및 노동자 4대보험료 지원
• (10인 미만)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료의 20% 지원 (고용보험, 국민연금제외)
- 1인 지원한도 : 사업주 월 최대 2.2만원, 노동자 월 최대 1.5만원

• (10인 이상 50인 미만) 4대 보험료 전체 금액의 50% 지원
- 1인 지원한도 : 사업주 월 최대 11.6만원, 노동자 월 최대 9.8만원

규모	지원내용	1인 지원한도/월
10인 미만	건강보험, 산재보험의 20%, 최대 6개월 지원	• 사업주: 최대 2.2만원 • 노동자: 최대 1.5만원
10인 이상 50인 미만	사회보험료(건강, 국민, 고용, 산재) 총액의 50%, 최대 6개월 지원	• 사업주: 최대 11.6만원 • 노동자: 최대 9.8만원

지급기간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달로부터 최대 6개월
※ 단, 예산 조기소진시 예산내 지급기간 재산정될 수 있음

지급주기 사업주가 보험료 완납 후 분기별로 신청하고, 신청 익월 말 보험료 지급 예정

• (노동자 보험료 지급방법) 사업주가 신청하고, 보험료 지원금을 개별 노동자에게 보험료 환급하는 방법으로 지급예정 (지급절차 및 안내 별도진행)
※ 보험료 산정은 분기별 4대 보험료 고지내역서 및 완납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므로,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지급불가

지원제외 대상

- 01** 소비·향락업 등 업종
※ 『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』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※ 『청소년보호법』 제2조 제5호의 '청소년 유해업소', 『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』 제2조, 『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』 제2조 해당업종
- 02**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
- 03** 정부·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등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지원받는 기관
- 04**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05**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의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사업주
- 06** 사업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
- 07** 타 사업에 의해 4대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
※ 단,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건강·산재보험의 20% 지원 가능



신청 및 접수

신청기간

2021. 3. 29.(월) ~ 예산 소진시까지

신청방법

신청서 등 제출서류 준비 후 신청·접수

01 온라인 전자메일(ssy7617@gnepa.or.kr) 접수

※ 제출 시 제목 : 4대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제출(기업명)

02 오프라인 (재)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등기 접수

※ 우)51408,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, 창원컨벤션센터 1층 (재)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

제출서류

- ① 4대 보험료 사업주 확인서
- ② 『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』 지원신청서
- ③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
- ④ 사업자 등록증
- ⑤ 근로계약서
- ⑥ 노동자 임금대장
- ⑦ 노동자 주민등록등본
- ⑧ 2021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근로자용)
- ⑨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(2020.1.1.~12.31., 고지인원 포함)



도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

